

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
관련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네이버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 민원, 지자체 질의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다수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의료법」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 없이 자율심의기구(의협·치협·한의협)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사전심의를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주무관 이재혁 서기관 박준형 보건의료정책 전결 2024. 11. 4.
과장 성창현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680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09 팩스번호 044-202-3933 / abb8600@korea.kr / 비공개(4,5,6)